

등록번호	청소행정과-15817
등록일자	2016.5.17.
결재일자	2016.5.17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자원재활용팀장	청소행정과장	복지문화국장		
이수민	오관홍	강현섭	전결 05/17 대김구연		
협조자					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###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한 2016년 상반기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계획

- 추진배경  
: 2013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함
- 대 상 : SSG Food Market 등 60개소

구 분	합 계	일반음식점	집단급식소	대규모점포	재점검업소	비고
점검 업소수	60	50	5	1	4	상반기 음식물쓰레기동 청결상태 미흡 업소 재점검

- 일 시 : 2016. 5. 23. ~ 5. 30. (6일간)
- 점검대상 : 일반음식점, 집단급식소, 대규모점포 등
- 점검반 편성 : 3인 1조(공무원 2, 시민단체 1)  
- 시민단체 점검자 실비 지급 : 점검 완료 후 서울시에서 개인별 계좌 이체
- 주요점검내용  
-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적정 여부  
-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방법 준수 여부  
-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, 보관 및 처리방법 적정여부 등
- 위반사항 적출시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 부과

2016. 5. .

강 남 구  
(청 소 행 정 과)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•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2013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함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다량배출사업장 60개소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 ) (신규 : 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정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O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용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- 종로구의 24개 자치구 시행
전문가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
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한

## 2016년 상반기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계획

2013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함.

### I 근거 및 추진방향

- 법적 근거
  -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
  -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
  -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
  -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- 추진방향
  - 다량배출사업장 자원화 및 자가처리 책무 확행
  - 발생량 원천감량, 재활용 촉진 및 배출량 정량적 관리

### II 현황

사업장 현황(2016. 5월 현재)

구 분	계	일반음식점 (200㎡이상)	휴게음식점 (200㎡이상)	집단급식소 (100인이상)	대규모점포 (3000㎡이상)	관광숙박시설
'16	2,401	1,856	223	236	32	54

다량배출사업장 관리체계

- ①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

-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, 재활용 계획 포함
- ②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
- ③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, 처리방법, 위탁재활용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
- ④ 아래 변경사항이 발생시 1개월 이내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
  -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
  -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
  - 음식물류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(자가, 위탁)을 변경하는 경우
  -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(시설)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⑤ 관리대장 2년간 보존,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
- ⑥ 구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·점검 실시

### III 개요 및 점검내용

점검개요

- 점검기간 : '15. 10. 26. ~ 10. 30.(5일간)
- 점검대상 : 다량배출사업장 60개소
  - 최근 1년 이내 신규 신고서 제출 업체
    - 발생량이 가장 많은 200㎡ 이상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(50개소)
    -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(5개소)
    - 신규 대규모점포 (1개소)
  - 2016년 하반기 점검시 음식물쓰레기통 청결상태 불량 4개 업체

구 분	합 계	재점검 사업장			
		일반음식점	집단급식소	대규모점포	관광숙박업
위반 업소수	4	4	0	0	0

- 점검반 편성 : 3인 1조(공무원 2, 시민단체1 )
  - 시민단체 : 강남구재활용추진협회 1명 (최계옥)

**□ 주요 점검내용**

-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적정 여부
  - 원형이용 및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적정 여부
-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방법 준수 여부
  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(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·방법)
-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, 보관 및 처리방법 적정여부
  -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,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

**□ 위반사항 적출시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부과**

-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

적용법	부 과 항 목	부과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이상
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2	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	300	600	1,000

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

-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신고(변경신고)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의무사항 준수토록 지도점검
- 지도점검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 시행관련 홍보물 배부 병행
- 점검 완료후 점검 참여자에게 개인별 계좌 실비 지급(서울시)
  - 50,000원/일 × 6일 = 300,000원

붙임 1. 다량배출사업장 지도·점검 서식

2. 2016. 상반기 시민합동 점검 대상사업장 (60개소) 끝.

## IV 추진 일정

- '16. 5. 16 : 시민합동 점검계획 수립
- '16. 5. 23 ~ 5. 30 : 시민합동 점검 실시
- '16. 5. 30 : 시민합동 점검실시 완료
- '16. 6. 1 :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서울시 제출

## V 행정 사항

- 점검결과 관리대장 미작성, 위탁처리 부적정 등 시정 조치한 지적사항에 대한